

##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654호
- 다. 제출일자 : 2025. 3. 31.
- 라. 회부일자 : 2025. 4. 2.

### 2. 제안사유

- 혼잡통행료 징수 방법이 양방향 징수에서 도심방향만 징수로 변경된 이후 혼잡통행료 징수소 주변 거주민의 필수통행(생활도로) 보장을 위하여 거주민 소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 감경 신설 등 감면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근거한 경형 승용 자동차 혼잡통행료 감경(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조례에 명시(신설) (안 제6조제2항제1호)

나.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의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의 개인소유 자동차에 한하여 혼잡통행료 감경(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 신설 (안 제6 조제2항제2호)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1. 23. ~ 2. 12.)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1천cc 미만의 ‘경형 승용자동차’와 차량등록지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중구인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남산 혼잡통행료 부과현황

- 혼잡통행료는 교통량 감축을 위한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하나로 서울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 제33조 및 제35조<sup>1)</sup>를 근거로 1996년 남산 1·3호터널<sup>2)</sup>을 교통혼잡지역으로

---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교통수요관리의 시행) ① 시장은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 안의 일정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교통수요관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2) 남산 1호터널 및 연결도로 : 삼일대로 퇴계로2가교차로 ~ 남산 1호터널~ 한남대로 한남오거리  
[(舊)퇴계로 주자동교차로 ~ 남산 1호터널 ~ 한남로 한남교차로]

남산 3호터널 및 연결도로 : 소공로 회현사거리 ~ 남산 3호터널~ 녹사평대로 재정관리단앞교차로  
[(舊)퇴계로 회현동교차로 ~ 남산 3호터널 ~ 반포로 경리단교차로]

지정 고시<sup>3)</sup>한 후, 터널을 진·출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통행료를 징수해 왔으나

동일 요금유지 등 교통량 감축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sup>4)</sup> '23~'24년 약 1년간 양방향 면제, 외곽방향 면제 등 다양한 검토를 시행한 결과 현재는 도심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상황임

※ 참고 :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 정지 등 정책실험('23. 3~5월)<sup>5)</sup>

- 시민들과 징수 효과 직접 확인(27년 만에 징수 '잠시 멈춤' 실시)
- 혼잡통행료 일시정지 정책 실험 기간별 실험내용과 결과
  - 2023.3.17.~4.16. : 외곽방향 면제(남산터널 통행량 5.2% 증가)
  - 2023.4.17.~5.16. : 양방향 면제(남산터널 통행량 12.9% 증가)
  - 2023.5.17.~ : 징수재개
  - 2024.1.15.~ : 도심방향만 징수(현재 유지 중)

- 한편, 혼잡통행료는 최초 도입 이후 2인 이하의 인원이 탑승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 자동차 등에 대해서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오전 7시~오후 9시, 14시간)에 2,0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승합 자동차, 버스, 화물차 등의 경우 전액 면제하고 경차(1천cc 미만)의 경우에는 50%를 감면하고 있음

3) <서울시 교통혼잡지역의 지정> 서울시 고시 제1996-291호(고시일시 : 1996.10.25.)

- 남산1호터널 및 연결도로 : 퇴계2가 교차로~남산1호, 남산1호~한남오거리

- 남산3호터널 및 연결도로 : 회현사거리~남산3호, 남산3호~계정관리단앞 교차로

4)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해야 vs 유지해야” : 조선일보, YTN, 뉴스1 등 다수언론

5) ‘남산 혼잡통행료 운영방안 개선 계획’ 교통정책과-123(2024. 1. 3.)

※ 참고 :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 대상

면제 대상 및 차량(11종)	50% 감면 차량
면제대상 :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승합자동차 등 ① 긴급자동차    ② 장애인                    ③ 의전용 ④ 외교용        ⑤ 보도용                    ⑥ 공무용 ⑦ 택시            ⑧ 경형 승합자동차 ⑨ 승용겸 화물형 승용자동차 ⑩ 제1·2종 저공해자동차 ⑪서울시 소재 다자녀 가족 소유 자동차 (둘째 18세이하 '24. 8. 21. 면제)	경형승용차(1,000cc미만)

■ 혼잡통행료의 감면 등(안 제6조)

- 현행 조례에서는 혼잡통행료 전액 감면 대상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징수 현장에서는 법 제35조제3항6)에 따라 1천cc 미만 경형 승용 차량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해 주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동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의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혼잡통행료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법에서 정하는 감면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혼잡통행료 운용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임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통행속도 또는 교차로 지체시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지정하고, 일정 시간대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cc 미만 승용 자동차는 혼잡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중구'의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서도 혼잡통행료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신설하는 것임
- 참고로 중구청에 등록된 차량은 총 51,221대이며 이중 자가용(승용·승합·화물 등)은 전체 등록 차량의 91%(46,708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용추계에 따르면 실제 남산 1·3호 터널을 통행하여 징수된 중구 거주지 차량은 8,586대<sup>7)</sup>이나 조례가 시행되면 실제 통행량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할 것임

※ 참고 : 중구청에 등록된 승용·승합·화물·특수(관용, 자가용, 영업용) 현황

(2025. 3월 기준 / 단위 : 대)

구분	합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관용	1,300	288	813	175	24
자가용	46,708	40,199	1,703	4,581	225
영업용	3,213	1,657	248	1,205	103
합계	51,221	42,144	2,764	5,961	352

7) 의안번호 2654)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남산 1·3호 터널 통행량 중 징수차량 거주지별 분석>

(단위 : 대)

구분	합계	서울				경기	인천	기타 (수도권 외)
		소계	중구	용산	기타			
통행량 (24.6월 기준)	251,433 (100%)	110,990 (44.1%)	8,586 (3.4%)	6,406 (2.5%)	95,998 (38.2%)	54,247 (21.6%)	22,576 (9.0%)	63,620 (25.3%)

- 중구 거주지 차량에 대한 50% 감면에 따른 비용추계 : 8,586대 × 1,000원 × 12개월 = 103,032,000원

- 법 시행규칙 제3조8)(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부과시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양방향으로 부과하던 혼잡통행료가 도심방향 부과로 변경되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감면 요구<sup>9)</sup>가 지속적으로 요청된 것을 고려할 때 인근 거주 주민에 대해 일부 감면하는 것은 혼잡통행료 부과 정책으로 장기간에 걸쳐 피해를 받은 거주주민들의 손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동 개정조례안은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25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고, 이는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중구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위한 시스템 준비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는 바, 향후 동 조례개정 취지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8) 「도시교통정비 촉진 시행규칙」 제3조(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9)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개선 요청’ 중구 교통행정과-92896(2023. 9. 14.)

- 도심 혼잡지역 거주민의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개선 민원 이첩’ 중구 교통행정과-110921(2023. 11. 9.)

- 남산 1·3호터널 인근 거주 중구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폐지